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00

발의연월일: 2021. 6. 1.

발 의 자 : 변재일 • 서영석 • 윤영찬

이탄희 • 이원욱 • 양경숙

강선우・고용진・한준호

설 훈 의원(10인)

제안이유

2018년 급성백혈병에 걸린 전직 항공승무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에서는 항공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 업종 종사자들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그동안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원자력 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법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 등을 기록 ·보관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현행법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안제1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8조제7항 등).
- 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 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폐업하는 경우 해 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관련 승무원 안전관리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분석할 수 있는 근 거를 둠(안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 마.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 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법률 제 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 앞의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지기의 설치·운영"을 "제5장 방사선·방사능 감지기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 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 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한 결과
-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시기"를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로 한다.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제24조제1항 중 "감시기"를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재활용고철취급자는"을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으로, "공정부산물 또는"을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후단 중 "감시기"를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감시기"로 하고, 같은 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를 "천연방사성핵종의"로, "분석 등"을 "분석 및 우주방사선안전관리 등"으로 한다.

제29조 앞의 "제6장 벌칙"을 "제7장 벌칙"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제18조제4항을"을 "제18조제5항을"로, "안전조치를 하지"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로, "항공운송사업자"를 "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에 따른 기록·보관 및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및 보고를 한 자
-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
	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
	<u> 여야 한다.</u>
<u><신 설></u>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
	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
	<u>게 하여야 한다.</u>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	
기 위한 절차, 방법 <u>등</u> 우주방	
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	<u><후단 삭제></u>
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u> </u>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

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원 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한 결과
-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 시 결과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인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설치・운영제6장 보칙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설치・운영제5장 보칙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저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매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 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 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 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 지 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u>감시기</u> 운영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

세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2
<u>항</u>
공운송사업자, 감시기
 ③・④ (현행과 같음)
에 24조(보고 및 검사) ①
· · · · · · · · · · · · · · · · · · ·
항공운송사업
<u> </u>
<u> 19 1 1 1 1</u>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u>재활용고철취급자는</u> 원료물질, <u>공정</u>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관리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갈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⑦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 지를 준용한다.

② <u></u>
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
<u>자는</u> <u>공</u>
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관
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u> 안전관리 또는</u>
<u>&</u>
항노선 및 운항횟수, 감시기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6장 벌칙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의3. (생 략) <신 설>
- 4. 5.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의 지정・운영 등) ①
<u>천연방사성핵종의</u> -
<u>분석 및 우</u>
주방사선안전관리 등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7장 벌칙</u>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u>한 자</u>
4.•5. (현행과 같음)
③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략)
- 7. <u>제18조제4항을</u> 위반하여 <u>안</u> <u>전조치를 하지</u> 아니한 <u>항공</u> <u>운송사업자</u>

<u><신 설></u>

7의2. (생략)

8. ~ 10.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 3.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운

1. ~ 6. (현행과 같음)
7. <u>제18조제5항을</u>
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
<u>하지자</u>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의2에 따른 기록·보관 및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
록·보관 및 보고를 한 자
<u>7의3.</u> (현행 제7호의2와 같음)
8. ~ 10. (현행과 같음)
4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
<u>지 아니한 자</u>
3. (현행과 같음)
⑤
<단서 삭제>

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